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의안 번호	18552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황명선의원 (2201643)	2024. 7. 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4.1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4.11.27.)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2.1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0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1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29.) 상정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25.1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2024. 11. 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4.11.2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4.11.27.) 상정, 축조심사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용혜인의원 (2205197)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 정소위원회(25.02.1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 정소위원회(25.09.0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 정소위원회(25.09.1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 정소위원회(25.09.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 정소위원회(25.09.29.) 상정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25.1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원회 직접 회부(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윤호중의원 (2208562)	2025. 2. 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 정위원회(25.09.08.)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 정소위원회(25.09.0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 정소위원회(25.09.1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 정소위원회(25.09.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 정소위원회(25.09.29.) 상정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25.1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원회 직접 회부(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2025. 8. 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 정위원회(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북기왕의원 (2212422)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25.1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김동아· 최혁진의원 (2212479)	2025. 8. 2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25.1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정태호의원 (2212727)	2025. 9. 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25.1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위성곤의원 (2214034)	2025. 11. 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2025. 11. 1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9.)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김성회의원 (221423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2214251)	2025. 11. 14.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호혜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도기본계획을,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까지).

마. 사회연대금융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시설비 등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 특례,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중앙회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아.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하. 그 밖에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연대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5. “지역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6. “민간기금”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7.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또는 연합체 등을 말한다.

8.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7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마.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제3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기본원칙)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그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조직과 지역공동체의 발전,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상호부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당 조직의 자립성과 협동정신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육·홍보에 힘써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연대경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②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

이 된다.

제2장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여건, 전망
2.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
7.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8.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기본계획 및 시·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을 수립하여 5년마다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여건, 전망
2.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
5.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시·도별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
7. 이전의 시·도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8. 그 밖에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시·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시·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 다음 연도 시·도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별 사회연대경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기본계획 및 시·도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제11조(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연대경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 중에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0.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 중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대표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

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 및 시·도시행계획과 시·도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시·도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도에 시·도 지역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도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해당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도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 사회연대경제 계획과 시·

군·구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시·군·구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에 시·군·구 지역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군·구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역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개발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4.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
5.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정책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원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게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연대경제가 민간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사회연대금융

제16조(사회연대금융제도 정비)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 확보와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활성화
4. 그 밖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연대금융제도

제17조(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지정과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투자·융자 등 금융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 위탁
2. 민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 위탁
3.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통한 민간기금 조성사업

4.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운영, 창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

5. 금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중개 사업

③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사회연대금융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사회연대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연대금융 중개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지정 요건·절차, 지정 취소 기준·절차, 사업 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 기

반을 조성하고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전담기관에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전담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별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4.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⑥ 제5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
2. 사회연대경제 자본시장 조성과 사회연대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3.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
4. 지역기금 및 민간기금 등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지원 및 이에 대한 투자

5. 금융 분야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 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

- 제1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이하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

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4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하며,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의 범위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비 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중소기업 시책에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포함시켜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창업, 경영 및 기술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협력
3.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연대경제 지역클러스터 조성 및 판로 구축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및 연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연대금융을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상·금융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24조(사회연대경제의 날 등) ①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연대경제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회연대경제의 날을 포함한 1주일을 사회연대경제 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5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해외 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6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

제26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3. 사업결과 보고서
4. 임원 현황
5.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 방법, 횟수, 시기, 공시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각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과 통합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과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